

제284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75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8. 23.
- 회 부 일 : 2021. 8. 26.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적용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내용 \ 구분	근거법령	구 조례	
		기존	변경
공무원 위원	영 제74조제3항 (위원회)	안) 제2조제3항 없음	안) 제2조제3항 공무원 포함
보궐위원의 임기	자 치 법 규 입 안 길라잡이 ¹⁾	안) 제5조제3항 전임자의 남은기간	안) 제5조제3항 삭제
회의공표	법 제27조의2, 영 제75조의2	안) 제10조 회의 비공표	삭제

1) “모든 위원회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회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는 입법례에 의하여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의2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의안공고 : 2021. 8. .

5.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예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전·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외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